

래미안 엘리니티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래미안 엘리니티는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운영.(www.raemian.co.kr)

- 건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사전 예약한 당첨자에 한하여 관람 가능함.(사전예약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안내)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및 이후 진행되는 계약기간 내 방문은 예약 시간에만 방문 가능.

■ 건본주택 방문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기를 통한 체온이 37.5 도 이상일 경우. (당 건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 시 손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등)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 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건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서류검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래미안 엘리니티 사이버 건본주택 오픈에 따라 자세한 분양정보를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02-959-0477)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감정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2020.04.17. 개정·시행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 06. 11.임.(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동대문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2018.8.27.이후)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 주택으로 「주택법」 제 64 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 73 조 제 1 항 별표 3 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이(이 경우 그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 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되며(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 조의 해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됨.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1.)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 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청약 1 순위 자격을 제한함(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 순위 청약 불가함.(2 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 조, 제 25 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함.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1 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 조제 2 호의 3, 제 4 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됨.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 1 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 조제 7 호의 2, 제 23 조제 4 항, 제 53 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국토교통부령, 제 565 호> 제 3 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 조제 7 호의 3 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 천만원(수도권은 1 억 3 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 1 호 가목 2 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거거전용면적+거거공용면적)에서 거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함.

■ 10 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 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 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 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순위, 2 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 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지역 1 순위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1 조 규정에 의거 제 1 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 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 2 호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 3 호 미성년자 3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 층을 말하며, 1 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1 조제 1 항제 1 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 년을 경과한 경우 2 순위 자격이 부여됨. (부칙<국토교통부령, 제 565 호> 제 5 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 인 1 건만 신청가능하며, 1 인 2 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단, 동일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5 조제 7 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6 조의 2 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 조제 6 항제 2 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 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 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 10. 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부터 적용)

■ 2 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 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 조제 8 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 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6 조 1 항 및 제 26 조의 2 제 1 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선정 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 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aemian.co.kr)공개됨.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6 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 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에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제 6 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9 조제 2 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 일이 경과한 후 3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청약신청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 조제 6 항에 의거 해외 거주에 대한 기준 변경

▪ 해외거주 인정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약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 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 연간 183 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 해당기간(①,②)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 ↳ 단순 90 일 이하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 적용례

-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 조제 2 항제 7 호에 의거, 동 규칙 제 4 조제 5 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88 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 조에 의거 1 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됨. (주택형 전용 85 m²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 85 m²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당첨 제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 조)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 1 항제 3 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 1 항제 6 호)	10 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 1 항제 7 호)	7 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		
토지임대주택(제 1 항제 5 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 3 조제 2 항제 7 호가목)	5 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 1 항제 2 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 1 항 4 호), 기타 당첨자(제 3 조제 2 항제 1·2·4·6·8 호)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 년
		85 초과	3 년
	그 외	85 이하	3 년
		85 초과	1 년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시(일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7 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 2,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고지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수원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의왕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 하남,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 투기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시 및 동대문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2018.8.28. 지정)
-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조회 등)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검색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동일 단지'에 본인이 특별공급을 신청한 후 배우자가 1 순위를 신청하는 경우, 1 순위당첨자 재당첨제한에 따라 부적격 처리되며,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부적격 당첨제한기간은 수도권 1 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 년), 위촉지역은 3 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불법 행위자(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처벌(「주택법」제 65 조 및 제 101 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 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10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됨.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단,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7 조의 3 제 2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수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함.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 64 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 73 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됨.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 및 계약세대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됨.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간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동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 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 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계약기간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 순위 해당 지역 (서울 2년이상 거주)	1 순위 기타 지역 (서울 2년 미만/경기/인천)	일반 2 순위 (서울/경기/인천)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0.06.22.(월)	2020.06.23.(화)	2020.06.24.(수)	2020.06.25.(목)	2020.07.01.(수)	2020.07.03.(금)~2020.07.10.(금)	2020.07.13.(월)~2020.07.17.(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조회 가능)	청약신청 자격서류 지참하여 건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 진행/별도 안내)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 Home'홈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한국감정원) 앱 					서울 송파구 충민로 17 래미안갤러리 3F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 ~ 14:00, 특별공급 신청 해당 접수서류 지참 시 가능, 은행창구접수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이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 8134 호(2020.06.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3-9 번지 일대 / 용두제 6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 층, 지상 21 층 16 개동 총 1,048 세대[조합 394 세대, 임대 179 세대 포함] 중 아파트 일반공급 475 세대
[특별공급 96 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22 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8 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 입주시기 : 2022 년 08 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수)

구 분	주택관리번호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타입 (약식표기)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우선 배정세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 중 주 택	2020000698-01	051.9100A	51A	51.91	19.72	71.63	36.11	107.74	31.43	52	5	-	16	1	22	30	6
	2020000698-02	051.9800B	51B	51.98	19.81	71.79	36.15	107.94	31.50	12	1	-	3	1	5	7	1
	2020000698-03	059.9600A	59A	59.96	21.41	81.37	41.71	123.08	35.70	63	6	-	18	2	26	37	8
	2020000698-04	059.9200B	59B	59.92	22.09	82.01	41.68	123.69	35.98	10	1	-	3	-	4	6	3
	2020000698-05	074.7900A	74A	74.79	26.11	100.90	52.02	152.92	44.27	16	2	2	4	1	9	7	-
	2020000698-06	074.9400B	74B	74.94	26.65	101.59	52.13	153.72	44.57	70	7	7	14	2	30	40	5
	2020000698-07	084.9800A	84A	84.98	29.02	114.00	59.11	173.11	50.02	67	-	-	-	-	-	67	6
	2020000698-08	084.9200B	84B	84.92	29.37	114.29	59.08	173.37	50.14	87	-	-	-	-	-	87	7
	2020000698-09	084.9900C	84C	84.99	30.11	115.10	59.12	174.22	50.50	55	-	-	-	-	-	55	6
	2020000698-10	084.9900D	84D	84.99	29.86	114.85	59.12	173.97	50.39	34	-	-	-	-	-	34	2
	2020000698-11	089.3600	89	89.36	33.45	122.81	62.16	184.97	53.88	5	-	-	-	-	-	5	-
	2020000698-12	101.9200A	101A	101.92	37.57	139.49	70.90	210.39	61.20	1	-	-	-	-	-	1	-
	2020000698-13	101.9000B	101B	101.90	36.80	138.70	70.89	209.59	60.85	1	-	-	-	-	-	1	-
	2020000698-14	109.7000	109	109.70	40.12	149.82	76.31	226.13	65.73	1	-	-	-	-	-	1	-
	2020000698-15	121.5800	121	121.58	43.41	164.99	84.57	249.56	72.39	1	-	-	-	-	-	1	-
합계										475	22	9	58	7	96	379	44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1 층을 말하며 1 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의미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타입 (약식 표기)	동구분 (라인)	층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 차(10%)	2 차(10%)	1 차(10%)	2 차(10%)	3 차(10%)	4 차(10%)	5 차(10%)	6 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30 일 이내	2020.10.15	2021.02.15	2021.06.15	2021.10.15	2022.01.14	2022.04.15			
51A	103 동 2 호	2 층	1	413,700,000	177,300,00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 층	1	417,900,000	179,100,000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4~5 층	2	422,100,000	180,900,000	603,0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20,600,000
		6~8 층	3	426,300,000	182,70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9 층	1	430,500,000	184,500,000	615,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10~13 층	4	435,400,000	186,600,000	622,0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24,400,000
51A	103 동 3 호	2 층	1	413,700,000	177,300,00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 층	1	417,900,000	179,100,000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4 층	1	422,100,000	180,900,000	603,0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20,600,000	
		5 층	1	426,300,000	182,70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6~8 층	3	430,500,000	184,500,000	615,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51A	103 동 4, 5, 6 호	2 층	2	417,900,000	179,100,000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3 층	2	422,100,000	180,900,000	603,0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20,600,000	
		4~5 층	4	426,300,000	182,70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6~9 층	7	430,500,000	184,500,000	615,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10~11 층	2	435,400,000	186,600,000	622,0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24,400,000	
		12 층	2	439,600,000	188,400,000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25,600,000	
51A	111 동 3, 4 호	1 층	1	417,900,000	179,100,000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2 층	2	422,100,000	180,900,000	603,0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20,600,000	
		3 층	2	426,300,000	182,70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4~5 층	4	430,500,000	184,500,000	615,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6~8 층	5	435,400,000	186,600,000	622,0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24,400,000		
51B	103 동 1 호	2 층	1	404,600,000	173,400,000	578,0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15,600,000	
		3 층	1	408,800,000	175,200,000	584,0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16,800,000
		4~5 층	2	413,700,000	177,300,00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6~9 층	4	417,900,000	179,100,000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10~13 층	4	422,100,000	180,900,000	603,0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20,600,000
59A	101 동 2 호 107 동 1, 2, 3, 4 호 109 동 3, 4 호 111 동 1, 2 호	1 층	1	498,400,000	213,600,000	712,0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142,400,000	
		2 층	9	503,300,000	215,700,000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143,800,000
		3 층	9	508,900,000	218,100,000	727,0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145,400,000
		4~5 층	13	513,800,000	220,200,000	734,0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146,800,000
59A	102 동 4 호	1 층	1	487,900,000	209,100,000	697,0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139,400,000	
		2 층	1	493,500,000	211,500,000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141,000,000
		3 층	1	503,300,000	215,700,000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143,800,000
		4 층	1	508,900,000	218,100,000	727,0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145,400,000
59A	102 동 5 호 108 동 1, 2 호	1 층	1	487,900,000	209,100,000	697,0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139,400,000	
		2 층	3	493,500,000	211,500,000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141,000,000
		3 층	3	498,400,000	213,600,000	712,0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142,400,000
		4~5 층	5	503,300,000	215,700,000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143,800,000
59A	102 동 2, 3 호 110 동 1, 2 호	1 층	1	493,500,000	211,500,000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141,000,000	
		2 층	4	498,400,000	213,600,000	712,0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142,400,000
		3 층	4	503,300,000	215,700,000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143,800,000
		4~5 층	6	508,900,000	218,100,000	727,0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145,400,000
59B	102 동 1 호	1 층	1	483,000,000	207,000,000	690,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138,000,000	
		2 층	1	487,900,000	209,100,000	697,0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139,400,000
		3 층	1	493,500,000	211,500,000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141,000,000
		4 층	1	498,400,000	213,600,000	712,0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142,400,000
59B	102 동 6 호	2 층	1	483,000,000	207,000,000	690,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138,000,000	
		3 층	1	487,900,000	209,100,000	697,0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139,400,000

		4층	1	493,500,000	211,500,000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141,000,000
59B	101동 1호	2층	1	493,500,000	211,500,000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141,000,000
		3층	1	498,400,000	213,600,000	712,0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142,400,000
		4층	1	503,300,000	215,700,000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143,800,000
		2층	2	569,800,000	244,200,000	814,0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74A	109동 1, 2호	3층	2	575,400,000	246,600,000	822,0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164,400,000
		4~5층	4	581,700,000	249,300,000	831,0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166,200,000
		6~9층	8	587,300,000	251,700,000	839,0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167,800,000
		2층	2	557,900,000	239,100,000	797,0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159,400,000
74B	112동 2, 3호 113동 2, 3호 114동 2, 3호	3층	6	563,500,000	241,500,000	805,0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161,000,000
		4~5층	12	569,800,000	244,200,000	814,0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162,800,000
		6~9층	24	575,400,000	246,600,000	822,0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164,400,000
		10~14층	26	581,700,000	249,300,000	831,0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166,200,000
		1층	3	643,300,000	275,700,000	919,0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84A	101동 3, 4호 104동 4, 5호 105동 4, 5호 106동 4, 5호	2층	8	649,600,000	278,400,000	928,0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185,600,000
		3층	8	656,600,000	281,400,000	938,0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187,600,000
		4~5층	16	663,600,000	284,400,000	948,0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189,600,000
		6~9층	26	669,900,000	287,100,000	957,0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191,400,000
		10~11층	6	676,900,000	290,100,000	967,0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193,400,000
		1층	1	636,300,000	272,700,000	909,0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84B	104동 1호 106동 1호 112동 1호 113동 1호 114동 1호	2층	3	643,300,000	275,700,000	919,0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183,800,000
		3층	5	649,600,000	278,400,000	928,0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185,600,000
		4~5층	10	656,600,000	281,400,000	938,0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187,600,000
		6~9층	20	663,600,000	284,400,000	948,0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189,600,000
		10~19층	25	669,900,000	287,100,000	957,0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191,400,000
		1층	1	643,300,000	275,700,000	919,0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84B	105동 1호 114동 4호	2층	2	649,600,000	278,400,000	928,0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185,600,000
		3층	2	656,600,000	281,400,000	938,0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187,600,000

		4~5 층	4	663,600,000	284,400,000	948,0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189,600,000
		6~9 층	8	669,900,000	287,100,000	957,0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191,400,000
		10~13 층	6	676,900,000	290,100,000	967,0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193,400,000
84C	104 동 2, 3 호 105 동 2, 3 호 106 동 2, 3 호	1 층	4	630,000,000	270,000,000	90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180,000,000
		2 층	6	636,300,000	272,700,000	909,0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181,800,000
		3 층	6	643,300,000	275,700,000	919,0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183,800,000
		4~5 층	12	649,600,000	278,400,000	928,0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185,600,000
		6~9 층	22	656,600,000	281,400,000	938,0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187,600,000
		10~11 층	5	663,600,000	284,400,000	948,0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189,600,000
84D	112 동 4 호 113 동 4 호	2 층	2	636,300,000	272,700,000	909,0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181,800,000
		3 층	2	643,300,000	275,700,000	919,0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183,800,000
		4~5 층	4	649,600,000	278,400,000	928,0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185,600,000
		6~9 층	8	656,600,000	281,400,000	938,0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187,600,000
		10~19 층	18	663,600,000	284,400,000	948,0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189,600,000
89	107 동 1, 2 호 109 동 4 호 110 동 1 호 111 동 1 호	1 층	5	677,950,000	290,550,000	968,500,000	96,850,000	96,850,000	96,850,000	96,850,000	96,850,000	96,850,000	96,850,000	193,700,000	
101A	106 동 4 호	21 층	1	875,000,000	375,000,000	1,250,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250,000,000	
101B	105 동 2 호	21 층	1	875,000,000	375,000,000	1,250,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250,000,000	
109	109 동 2 호	1 층	1	760,760,000	326,040,000	1,086,80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217,360,000	
121	104 동 4 호	1 층	1	836,290,000	358,410,000	1,194,700,000	119,470,000	119,470,000	119,470,000	119,470,000	119,470,000	119,470,000	119,470,000	238,940,000	

※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공통 유의사항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주택공급(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 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단,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 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잔금의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대행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 분		51A	51B	59A	59B	74A	7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	-	1	-	1	2	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	1	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1	-	1	4	
	장애인	2	1	1	-	-	1	5	
	중소기업 근로자	1	-	2	-	1	2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서울시 2년이상 거주 (50%)	-	-	-	1	4	5	
		서울시 2년미만, 경기, 인천(50%)	-	-	-	1	3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2	2	14	2	3	11	44
		일반공급(25%)	4	1	4	1	1	3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2	-	1	2	7	
합 계		22	5	26	4	9	30	9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 조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서울시 동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 조의 2 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제 21 조제 3 항제 11 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서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포함)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제 1호 및 제 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조제 2호의 3 및 제 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 및 [별표 1]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data-bbox="302 1093 2085 1289">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재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 1 항제 3 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 1 항제 6 호)		10 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 1 항제 7 호)		7 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		
토지임대주택(제 1 항제 5 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 3 조제 2 항제 7 호가목)		5 년간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 1 항제 2 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 1 항 4 호), 기타 당첨자(제 3 조제 2 항제 1·2·4·6·8 호)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 년	
		85 초과	3 년	
	그 외	85 이하	3 년	
		85 초과	1 년	

※ 청약 제한사항(과거 당첨사실등) 조회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한국감정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 조 2 호(국가유공자), 3 호(국가보훈대상자), 8 호에 의거 제 35 조제 1 항제 6 호(장기복무제대군인), 7 호(10 년 이상 복무한 군인), 17 호(장애인), 23 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 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② 10 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 복지단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도봉) 복지과 ④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용 85 m²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범위 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 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 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 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 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 세 미만의 직계 자녀 3 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 개월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 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 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 5 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 년 이상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 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p>신혼부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 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 신혼부부 우선공급 : 대상 주택수의 75 퍼센트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 조제 2 호에 의거 순위 내 경쟁 시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입주자 선정 순서(소득→순위→거주지역→미성년자녀수),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 ▷ 우선공급 7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 일반공급 2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선정) ① 소득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우선공급 75% : 소득 100%이하(부부합산 120%이하) (2) 일반공급 25% : 소득 120%이하(부부합산 130%이하) ② 순위 -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한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 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
<p>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 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선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3% 범위 내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함.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②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와 동시발표하며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 임신 또는 자녀를 입양한 부부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으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 원	6,226,342 원	6,938,354 원	7,594,083 원	8,249,812 원	8,905,541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 원	7,471,610 원	8,326,025 원	9,112,900 원	9,899,774 원	10,686,649 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 원 ~ 6,665,980 원	6,226,343 원 ~ 7,471,610 원	6,938,355 원 ~ 8,326,025 원	7,594,084 원 ~ 9,112,900 원	8,249,813 원 ~ 9,899,774 원	8,905,542 원 ~ 10,686,649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 원 ~ 7,221,478 원	7,471,611 원 ~ 8,094,245 원	8,326,026 원 ~ 9,019,860 원	9,112,901 원 ~ 9,872,308 원	9,899,775 원 ~ 10,724,756 원	10,686,650 원 ~ 11,577,203 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신청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1.)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8.06.11.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 조 제 4 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유의사항,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p>청약 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조제 2항 제 1호, 제 2호, 제 4호, 제 6호, 같은 항 제 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 8호의 주택), 제 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 됨.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 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2순위로만 청약 가능)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 조 제 6 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될 경우 모두를 무효 처리함. 또한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해당제한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함)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 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태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 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 65 조 제 1 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 Home’(https://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 조 제 5 항, 제 19 조 제 3 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 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 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 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00%가점제)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 6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 주택을 소유한 세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 6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 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순위 청약이 제한됨.(2 순위로 청약가능)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 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 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 순위 청약제한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 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해당점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 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 3 항 [별표 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m ²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m ²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m ²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 해당구간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 조 제 8 호 [별표 1 의 1 호]

구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또는 제 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p> <p>※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동 규칙 제 2 조 제 7 호의 3)</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p>
② 부양 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p> <p>-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 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p> <p>※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 53 조제 6 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 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p> <p>-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적용 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p> <p>2)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함.</p>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 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23 조제 4 항 및 제 53 조에 따름.</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 조 제 8 호 [별표 1 의 2 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 세 미만 미혼자	0	8 년 이상~9 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 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 년 미만	2	9 년 이상~10 년 미만	20	
		1 년 이상~2 년 미만	4	10 년 이상~11 년 미만	22	
		2 년 이상~3 년 미만	6	11 년 이상~12 년 미만	24	
		3 년 이상~4 년 미만	8	12 년 이상~13 년 미만	26	
		4 년 이상~5 년 미만	10	13 년 이상~14 년 미만	28	
		5 년 이상~6 년 미만	12	14 년 이상~15 년 미만	30	
		6 년 이상~7 년 미만	14	15 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 명	5	4 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 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 세 이상 ~ 만 30 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 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제외
		1 명	10	5 명	30	
		2 명	15	6 명 이상	35	
		3 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 개월 미만	1	8 년 이상~9 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 개월 이상~1 년 미만	2	9 년 이상~10 년 미만	11	
		1 년 이상~2 년 미만	3	10 년 이상~11 년 미만	12	
		2 년 이상~3 년 미만	4	11 년 이상~12 년 미만	13	
		3 년 이상~4 년 미만	5	12 년 이상~13 년 미만	14	
		4 년 이상~5 년 미만	6	13 년 이상~14 년 미만	15	
		5 년 이상~6 년 미만	7	14 년 이상~15 년 미만	16	
		6 년 이상~7 년 미만	8	15 년 이상	17	
7 년 이상~8 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제 28 조제 6 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 호 또는 1 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 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 순위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 조 제 4 항 및 제 53 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 1 호와 제 2 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 의 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 의 3. 제 2 조제 4 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제 3 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 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 호 또는 2 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 7696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 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 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 27 조제 5 항 및 제 28 조제 10 항제 1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20.06.22(월) (인터넷: 08:00 ~17:30) (건본주택: 10:00 ~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건본주택 방문접수: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한국감정원) 앱
일반 공급	1 순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2020.06.23(화) / 08:00 ~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한국감정원) 앱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0.06.24(수) / 08:00 ~17:30		

	2 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0.06.25(목) / 08:00 ~17:30		
<p>※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p> <p>※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p> <p>※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p> <p>※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 대조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p> <p>※ 1 순위 청약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특별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해당지역" 접수시 부적격 처리) <p>※ 2 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p>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한국감정원(全 은행 주택공급신청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 「청약신청」(특별공급 or 일반공급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 「청약신청」(특별공급 or 일반공급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p> <p>[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됨]</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T 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	------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제 3 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 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 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 순위 : 1 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 제 50 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 조, 제 58 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 47 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 조제 8 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 5 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V.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7.01(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7.03(금)~07.10(금) (사전 예약 진행/별도 안내) • 장소 : 래미안 엘리니티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민로 17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7.13(월)~07.17(금) 10시 ~ 16시 • 장소 : 래미안 엘리니티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민로 17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3층 / 문의 : 02-959-0477)
일반공급	1 순위(해당) / 1 순위(기타) /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예비입주자 : 개별 통지 예정
<p>※ 당첨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p> <p>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p> <p>*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p> <p>※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p> <p>※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감정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p> <p>※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p> <p>※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음. (단, 임의 분양시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함)</p> <p>※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p> <p>※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상의 기간)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p> <p>※ 당첨자 사전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 시 부적격 서류 검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람.</p> <p>※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p>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야 함.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 Home (순 은행 주택공급신청자)
이용기간		2020.07.01(수) ~ 2020.07.10(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APT(아파트)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APT(아파트) → 당첨조회(최근 10일)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7.0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격검증 구비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람.(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자격검증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제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1 순위 해당지역 당첨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이상의 기간동안 출입국사실 기록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 조 제 5 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 부양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이상의 기간동안 출입국사실 기록 표기 하여 발급) -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 년이상의 기간동안 출입국사실 기록 표기하여 발급) - 30 세 미만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 세 이상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		복무확인서	본인	10 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10 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 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19 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 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 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 세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해당자 모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만 30 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 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 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 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 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 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1 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협약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제 3 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주택공급신청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주택공급신청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 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①, 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세무서 ②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①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 월 1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장소

※ '비사업자 확인 각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만 19 세 이상의 세대원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무직자일 경우에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 월 1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시 구비 서류 (자격검증서류 제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특공/일반공급)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 분양금 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 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 3 자 대리 계약 불가

		○	자격검증 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 3 자 대리인 방문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택공급신청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에 한함)
	○		위임장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 조 제 3 항 제 24 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 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 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1 순위 당첨자 중 계약체결 후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년, 수도권 외 6 개월, 위촉지역 3 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 조 제 4 항
 - 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 단,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 조 3 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년, 수도권 외 6 개월, 위촉지역 3 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 조 3 항 및 제 57 조 8 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음.(단, 임의 분양시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 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 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 조 제 3 항 및 제 57 조 제 8 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 58 조 제 4 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 57 조 제 7 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 58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억제지역 1 년, 수도권 외 지역 6 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8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 57 조 제 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같은 순위(제 27 조 및 제 28 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 52 조 제 3 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17-0020-2580-61	용두제 6 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 삼성물산㈜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지정된 2 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 1·2 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 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 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 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일부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 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대출금 신청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 하지 않음. 미납 시 연체료 가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VI.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계약자 별도 안내)

■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확장위치	공급금액	주택형(약식표기)	확장위치	공급금액
51A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5,900,000	84C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20,900,000
51B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5,900,000	84D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20,600,000
59A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6,800,000	89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22,700,000
59B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7,900,000	101A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31,200,000
74A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8,900,000	101B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33,500,000

74B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9,500,000	109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25,000,000
84A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9,600,000	121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26,600,000
84B	발코니 확장 (안방 및 주방측 발코니 제외)	19,900,000	-	-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제 2 조제 14 호, 제 46 조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간마감, 창호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인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돌출, 벽체돌출, 우물천장디자인변경, 조명위치변경, 일부배관노출등의 마감상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호등으로 설치되며(주방발코니 분합문제외), 향후 구조검토등에 의해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 될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공사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고,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등이 시공되나, 결로발생 및 일부벽체의 돌출이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 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에는 벽체의 종류에 따라 두께가 상이하여 연속된 벽면에서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면을 맞추기 위한 벽체 두께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형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 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형세대의 경우 일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중샤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실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확장계약시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실외기실등) 외부창호는 단창 또는 그릴등으로 설치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해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세대를 전시하였으나, 기본형(비확장) 선택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제품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 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기본형(비확장)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 마감 및 디자인이 변경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의 개수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벽부형 냉매매립배관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
- 단위세대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유상및기본제공용선택타입만) 비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위치, 벽체두께, 커튼박스깊이 및 폭, 우물천장 깊이 및 폭 등) 및 디자인(커튼박스, 우물천장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비확장선택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확장세대와 인접시, 발코니 비확장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용압구조검토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는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을 개별시공함으로써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배치로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안방발코니에 전통형 빨래 건조대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주방가구 벽면 칸스톤 및 미드웨이 수납장 설치됨.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주방벽은 국내산 타일로 시공되며, 전통형 빨래건조대 및 주방미드웨이장은 미제공 됨.

■ 추가 선택품목 - 천장형(무풍 / 무풍+공기청정 중 택 1)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선택형	설치위치 및 수량	공급금액		제조사
			무풍 시스템에어컨	무풍 + 공기청정 시스템에어컨	
51A,B	선택 1	거실+안방 (2 개소)	3,630,000	4,11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 1+침실 2 (4 개소)	6,610,000	7,550,000	삼성전자
59A,B	선택 1	거실+안방 (2 개소)	3,660,000	4,14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 1+침실 2 (4 개소)	6,660,000	7,610,000	삼성전자
74A,B	선택 1	거실+안방 (2 개소)	3,880,000	4,36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 1+침실 2 (4 개소)	7,230,000	8,170,000	삼성전자
84A,B,C,D	선택 1	거실+안방 (2 개소)	3,890,000	4,37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 1+침실 2 (4 개소)	7,230,000	8,180,000	삼성전자
89	선택 1	거실+안방 (2 개소)	3,670,000	4,15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 1+침실 2+스튜디오 (5 개소)	8,650,000	9,830,000	삼성전자
101A,B	선택 1	거실+주방+안방 (3 개소)	5,800,000	6,51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주방+안방+침실 1+침실 2+침실 3 (6 개소)	11,120,000	12,530,000	삼성전자
109	선택 1	거실+안방 (2 개소)	3,910,000	4,40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 1+침실 2+스튜디오 (5 개소)	8,770,000	9,940,000	삼성전자
121	선택 1	거실+안방 (2 개소)	3,920,000	4,410,000	삼성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 1+침실 2+스튜디오 (5 개소)	9,130,000	10,320,000	삼성전자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벽부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 됨
51, 59, 74, 84, 89, 101, 109, 121 m² : 거실, 안방 (2개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설치되며(무풍 / 무풍+공기청정 중 택 1), 견본주택 설치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 빌트인가전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	----	------

51A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2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51B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2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59A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4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59B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5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74A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4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74B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6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84A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60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84B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60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84C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4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84D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4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89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2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101A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9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101B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5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109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52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121	빌트인 김치냉장고(220L)	1,600,000
	빌트인 전기오븐(50L)	820,000
	인덕션(3 구)	750,000

※ 빌트인 김치냉장고 관련 유의사항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 됨.
- 제품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 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 는 유상처리 됨.
- 설치제품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옵션 미선택시 일반 프리스탠딩 김치냉장고 배치 가능한 공간이 제공됨.(51A, 51B 제외)
- 옵션 선택시 주방가구도어 마감포함하여 제공됨.

※ 빌트인 전기오븐 관련 유의사항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 됨.
- 제품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 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 는 유상처리 됨.
- 설치제품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전기레인지(3 구 인덕션) 관련 유의사항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 됨.
- 제품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 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 는 유상처리 됨.
- 설치제품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해당옵션 미선택 시, 4 구 가스쿡탑이 설치됨.

■ 추가 선택품목 - 현관중문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51A	현관 중문 + 현관 1 면 아트월 타일 + 픽처레일	1,720,000
51B		1,720,000
59A		1,760,000

59B		1,700,000
74A		1,760,000
74B		1,750,000
84A		1,820,000
84B		1,740,000
84C		1,830,000
84D		1,730,000
89		1,760,000
101A		1,640,000
101B		1,640,000
109		1,760,000
121		1,820,000

※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현관 1면 아트월 타일과 픽처레일의 면적, 길이 위치는 평면 컨디션에 따라 상이함.

※ 옵션 미선택시 벽면은 기본 도배지로 시공됨.

■ 추가 선택품목 - 원목마루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51A	유럽산 원목마루	9,400,000
51B		9,500,000
59A		9,700,000
59B		10,200,000
74A		12,400,000
74B		13,100,000
84A		13,600,000
84B		13,500,000
84C		14,600,000
84D		14,500,000
89		13,400,000
101A		18,600,000
101B		17,600,000
109		17,400,000
121		18,900,000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해당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은 강마루로 시공됨.

- ※ 원목마루 자재특성상 고유의 웅이 및 무늬가 있을 수 있음.
- ※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 세라믹 박판타일 아트월(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51A	기존 거실 아트월 부위 + (복도 또는 주방) 1 면 세라믹 박판타일 아트월 업그레이드 (이태리산 박판타일)	3,790,000
51B		3,790,000
59A		4,280,000
59B		3,660,000
74A		4,530,000
74B		4,820,000
84A		4,300,000
84B		4,160,000
84C		4,710,000
84D		4,080,000
89		4,280,000
101A		4,650,000
101B		4,680,000
109		4,530,000
121		4,300,000

-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 옵션 미선택시 기존 거실 아트월 부위는 기본형 아트월 타일이 시공되며, (복도 또는 주방) 1 면 추가 부위는 도배 마감으로 시공됨.
-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아트월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 외산 주방가구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51A	외산 주방가구(독일 ALNO 社) + 주방 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UPGRADE	10,020,000
51B		10,010,000
59A		15,020,000
59B		15,210,000
74A		15,170,000
74B		15,130,000
84A		18,630,000
84B		18,060,000

84C		18,620,000
84D		17,910,000
89		19,120,000
101A		20,180,000
101B		20,760,000
109		21,440,000
121		22,530,000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함.

※ 옵션 미선택시 국산 주방가구가 설치됨.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구성 및 액세서리, 싱크볼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시 프리미엄급 주방상판 및 벽체로 엔지니어드스톤이 업그레이드 됨.(미드웨이장 미설치)

■ 추가 선택품목 - 수납강화형 스마트미러 입식화장대(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품목	공급금액
74A	수납강화형 입식 화장대 + 스마트 미러 거울장	1,820,000
74B		1,760,000
84A		1,860,000
84B		1,860,000
84C		1,810,000
84D		1,800,000
101A		1,800,000
101B		1,800,000
109		1,170,000
121		1,860,000

※ 옵션 미선택시 기본 좌식형 화장대 설치.

※ 51, 59, 89 타입은 화장대 미제공 타입으로 해당 없음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 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 4 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상기 표기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확장은 상부세대 비확장 시 천장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커튼박스/등박스/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등이 축소/변경 될 수 있으며, 하부세대 비확장 시 바닥난방 범위는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확장 및 비확장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서는 향후 소비자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정 시점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 행사를 검토 중이고, 이에 따라 상기 추가 선택품목 이외의 선택품목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 행사 이전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지할 예정임(일부 마감자재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 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지정된 옵션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향후 고지할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옵션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VI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 예정일 및 사전 점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 조 제 3 항 제 27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예정일 : 2022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6, 37 조, 동법 시행령 제 36, 37, 38 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 조,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사우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 구획 높이
1 단지: 2.7m, 2 단지: 2.3m	1 단지 지하 1 층: 2.7m 1 단지 지하 2 층 및 2 단지: 2.3m	2.1m

■ 내진설계

• 건축법 제 48 조 제 3 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 48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등급은 1 등급, 내진능력은 VII - 0.218g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주)원중합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더베스트이앤씨	(주)아이비엔지니어링	(주)아이비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717,170,000	498,803,874	405,000,000	27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20,728,000,000 원	제 01282020-101-00038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 4 조 (보증사고)	<p>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음)보다 25 퍼센트 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 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	---

	<p>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p> <p>2. 제 1 항 제 2 호에서 제 4 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p> <p>※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p>※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p>
<p>보증약관 제 1 조 (보증채무의 내용)</p>	<p>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p>보증약관 제 2 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p>	<p>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p>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p> <p>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p>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p>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p>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p> <p>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p> <p>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p> <p>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p> <p>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p> <p>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p> <p>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p> <p>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4. 보증채권자가 제 5 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3 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 보증회사가 제 6 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 1 항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 1 항 제 6 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용두제 6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 264171-0006653)	삼성물산㈜ (법인등록번호: 110111-0015762)

Ⅷ. 유의 사항

■ 일반 사항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mock-up 세대)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건본주택과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 가구 위치 등)이 될 경우 내, 외부 조망 및 내부 마감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공용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인접단지와의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사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 연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표현되었으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단지별 대지를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용두제 6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하자방지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건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출출물(DA 등),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출입구 문주, 동출입구 캐노피, 단지 내 도로 및 공공보도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 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세우관,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유치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은 하나의 단지로 관리/운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1~2 단지에 설 치된 모든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헤스티아 라운지 등)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영유아 보육법 개정(18.12.24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영유아보호법 제 12 조 제 3항에 따라 향후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일부세대는 주동 코아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구역내 별도 근린생활부지가 아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대지가 별도로 분리되어있지 않고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접근가능해야 함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외부창호 디자인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함)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납부 및 인수인계 후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및 경량벽체가 적용됨 · 문주 디자인은 구조계산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함 · 1 단지, 2 단지 관리비는 각각 또는 통합 산정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예정 · 입면분할창 및 외부 마감재 설치 등으로 인해 세대 국기봉꽃이 설치위치가 1 층 동 출입구 전면 1 개소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원목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자재(석재, 목재, 원목마루 등)로 시공되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자연적 패턴과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베인(Vein)이 발생하는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옵션선택 자재인 원목마루는 천연자재로 표면 무늬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웅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마루 옵션 선택시 마루의 깔기 패턴 및 온장 길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도어의 용도 및 생산 방식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타일(기본형, 옵션형 포함)은 자재 특성상 베인(Vein) 및 배치, 패턴, 나누기도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수입주방가구는 제조사별로 색상, 구성, 세부 디테일이 다르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안방불박이장(74B 설치)은 전시품목으로 판매상품이 아님. • 기본 제공인 국산 주방가구(상판 및 벽판포함)의 세부 색상, 마감재, 디테일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국산 제품 (74B,59A)을 참고하시기 바람. • 시트 제조사 및 컬러, 질감은 분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걸레받이의 색상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p>견본주택/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현관 공기청정시스템 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홍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기능,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실제 시공시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모형, CG와 견본주택 시공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함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 분	내 용
-----	-----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별로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중 상품성, 기능,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문주, 경비실, 쓰레기/자전거 보관소,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 기타부대시설 등의 추가,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음 • 대관협의,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와 시설물 관련 동 입주인 동의하에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부대복리 시설의 창호, 마감재 종류 및 디테일, 기계 및 전기 설비 시스템 등과 입면 변경 사항은 현장여건 및 미관개선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 • 지붕구조물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부지 외 기타부지(공원, 녹지, 노유자시설, 도로, 공지 등)는 해당 계획이 변경(조경계획, 부지의 용도, 사업계획 등)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는 대관협의 및 요청에 따라 도로 레벨, 차선수, 도로 폭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계약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도로선형, 옹벽, 석축 등의 변경으로 일조, 조망, 환경,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p>단지</p>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 2개 블록으로 나뉘져 있으나 사업주체가 하나인 한 단지이며, 주민공동시설과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 및 주차장 등의 운영 및 관리방식은 추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해 결정됨 • 단지 경계선에 인접한 구간은 고저차로 인하여 경사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가 생길 수 있으며, 단차부에 옹벽이 조성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대관요청,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 및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 도로(차도, 보도), 각종 옥외 시설물, 녹지의 위치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주변시설,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산책로, 쓰레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 확인 요망) • 외부 난간대의 재질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 담장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 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철제문, 방화문의 설치위치, 폭, 높이, 형태,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사다리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입면분할창으로는 사다리차 사용 불가) • 세대에 테라스 또는 선공공간이 제공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세대의 사용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옥상 전유에 대한 일체의 이의/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테라스가 제공되는 세대들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방하여야 함(대상세대 : 89형, 109형, 121형, 101A형, 101B형) •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층과 면한 112동(201호,302호)과 113동(201호, 202호)세대는 각 시설의 지붕층으로 진입과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자가 지붕층을 진입할 수 있음 • 주동,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등의 기초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및 현장 재하시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말뚝기초→지내력기초 또는 지내력기초→말뚝기초)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상 인접한 세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준공 시 소음실측결과에 따라 단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 시 인접세대는 채광, 조망에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중앙광장, 기부채납 공원, 운동시설, 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주변도로와 레벨차가 있으며, 일부동(107동, 114동) 1층 세대의 경우 주변 도로보다 1층 바닥이 낮아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상이하며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음 • 1단지에는 선큰 및 지하 주민공동시설로의 이동을 위한 계단(2개소)과 옥외용 엘리베이터(1개소)가 설치되며, 계단은 지하2층으로는 연결되지 않음 • 하부 시설물(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빗물저류조, 저수조, 정화조 등)의 D.A(급기/배기), 배기구(사우나용 보일러 연도, 사우나 배기)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수증기 발생,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DA의 위치, 규모,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확인 요망) • 단지출입구(보행자, 차량, 비상차량, 문주 등), 지하주차장램프(캐노피 포함)등과 인접한 주동 및 세대에는 전망간섭,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확인 요망) • 각 동의 저층부세대는 단지주변 도로 및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과 가로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층부 세대는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다음 세대는 인접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2동1~6호, 103동 1~6호, 105동 2~3호, 106동 1호~2호, 110동1~2호, 111동 1~4호, 112동 3~4호, 113동 1호, 4호,) • 105동, 106동, 113동, 201동에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정화조 배기구, 커뮤니티시설의 사우나 배기구 및 보일러 배기연도가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 확인 바람) •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인접세대에는 소음과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확인 요망) (101동 4호세대 후면과 104동 1호세대 후면, 102동 3호세대 전면, 103동 1호세대 후면, 105동 1호세대 측면, 106동 1,4호세대 후면, 107동 1호세대 측면과 108동 1호세대 측면, 108동 2호세대 후면, 109동 2호세대 후면과 110동 2호세대 후면 및 111동 3~4호 세대 후면, 112동 4호세대 측면, 113동 1호세대 후면과 4호세대 후면, 113동 1호세대 측면과 114동 2~3호 세대 전면, 4호세대 측면) •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토목 및 설비배관들에 의하여 위치와 크기는 조정될 수 있음 • 107동, 108동, 109동, 113동 인근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DA 가 설치됨에 따라 발전기 가동 시 매연, 진동,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5동, 112동, 113동, 201동 인근 지하에는 펌프실, 보일러실, 정화조 등이 계획되어 있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소음, 진동 등이 느껴질 수 있음 • 112동 1~2호 라인과 113동 1~2호 라인은 근린생활시설의 지붕과 면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및 지붕 관리 출입자들에 의한 소음, 사생활권 침해 및 냄새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지하 커뮤니티 등 부대복리시설 실외기 예상위치: 101동, 105동, 108동 인근 커뮤니티 연결계단 옆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예상위치: 112동, 113동 인근 근린생활시설 지붕) • 105동의 1층에는 경로당과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사우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2호세대 전면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연결되는 선큰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12동 전면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 근린생활시설용 태양광판넬이 설치되어 해당동 세대에는 반사광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수도계량기 BOX 및 도시가스 정압기 등이 단지내에 설치될 수 있음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나누기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어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정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공용공간 반자의 설치 유무,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및 지하층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폭과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일부 동의 지붕 옥상구조물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이 배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치 등 세부 계획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탑프레임 및 옥상조형물의 형태/마감재, 입면문양, 메지션, 측벽조형물형태/마감재, 측벽문양, 코어문양, 저층부 석재(돌출 및 나누기), 동 출입구 형태/마감재) 및 색채는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컬러에 따라 창호프레임 및 창호유리, 실외기그릴의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지하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상부 시설이 단열이 필요한 부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20년 4월) 기준이며, 코어 번호는 동 거실 창이 있는 정면 기준 우측에서 좌측순 임) <p>101동 1호코아 15인승 1대, 2호코아 15인승 1대, 102동 1호코아 15인승 1대, 2호코아 15인승 1대, 3호코아 15인승 1대, 103동 1호코아 15인승 1대, 2호코아 15인승 1대, 3호코아 15인승 1대, 104동 1호코아 15인승 2대, 2호코아 15인승 1대, 105동 1호코아 15인승 2대, 2호코아 15인승 1대, 106동 1호코아 15인승 2대, 2호코아 15인승 1대, 107동 1호코아 15인승 1대, 2호코아 15인승 1대, 108동 15인승 1대, 109동 1호코아 15인승 1대, 2호코아 15인승 1대, 110동 15인승 1대, 111동 1호코아 15인승 1대, 2호코아 15인승 1대, 112동 15인승 2대, 113동 1호코아 15인승 2대, 114동 15인승 2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창호의 크기, 형태, 열림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창호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레벨차이로 인해 주동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일반적인 주동 하부 마감재와 다른 마감이 적용될 수 있음 · 주변 도로, 주변 대지와외 레벨차이로 인해 세대 전면에 옹벽, 사면 등이 위치하는 경우 일조, 조망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또는 1층에 설치된 로비공간(우편물 보관소, 로비공간 등)은 공용시설물이며 관리 여부에 따라 우편물 분실 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재의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발코니 외부 창호(새시)는 설치 또는 미설치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개인설치 시 외부창호 디자인 준수)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동 옥상에 전파수신 상황을 고려하여 TV 공정 및 위성수신 안테나와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내부 또는 동 주변에 제연 환풍의 DA 및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제연 환풍, D/A(급기구,배기구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부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형태(옥상, 지붕 등) 및 마감재, 패턴, 색채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개선 등을 이유로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실내용 헬스운동기기와 불박이형 가구(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비품 등)와 비품은 제외되며,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불박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탈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공사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공사시 신발장, 락커 수량 및 배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비주거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과 배기탑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펜스는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은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뮤니티 평면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의 인테리어 계획, 색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이동식 가구는 미제공 품목(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비품 등)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사업주체가 하나로 단지 내 1단지 및 2단지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임대주택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 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내부 선큰의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아파트동에서 단지내 부대시설로의 접근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음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시설용, 제연용)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를 위한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 설치될 예정으로,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교체 등 유지 관리 시 사다리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 수목의 종류 및 규격,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수경시설의 형태 및 위치, 자연형 폭포의 연출방향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전체적인 위치와 개소 및 시설내 개별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형태는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조경공간 내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물의 위치, 형태, 개소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조경공간 내 포장재의 종류 및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조경수목 고사방지를 위한 지하주차장 내 조경배관이 지나가며, 이에 따라 소음(물흐르는 소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 위치, 타입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구조 또는 데크플레이트구조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부위, 공법, 부재크기, 형태 특성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단지별 부위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골조가 PC인 경우 별도 천장 마감재 없음 · 지하주차장 천장고는 차로 약 2.3m, 주차면 약 2.1m 정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보다 차고가 높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음(무인택배함이 설치되는 1단지 지하1층의 택배차량 통과되는 차로 부분은 약 2.7m 정도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 동출입구는 사용성, 상품성 개선을 위해 평면 및 입면 형태, 마감재, 색상 등 계획안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벽, 바닥 그래픽 및 사인은 미관과 인지성 개선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단지별, 동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지하층 PIT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SMC판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임 · 단지별 세대당 주차가능대수에는 차이가 있음(1단지 1.2대/세대, 2단지 0.81대/세대) · 무인택배함은 6개소가 계획되어있으며, 위치와 규모 등 계획내용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사용과 운영방안은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전체(아파트) 주차대수 1,193대(1단지 1,056대, 2단지 137대)로 계획되어 있고,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하주차장은 단지의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1단지 지하주차장 내에 생활형 주차(1톤 탑차)가 주차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구획이 1단지 지하1층에 6대 계획되어있으며.(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 충전구획의 위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지 지하1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6구획)은 주차구획이 아니므로, 장시간 주차 등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주동 평면형태 및 구조에 따라 일부세대는 지하주차장에서 동 출입구로의 경로가 다른 동 또는 코아에 비해 좁을 수 있음.(대상 세대 : 101동 1~2호 세대, 102동 5~6호 세대)
	주출입구 /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의 상세 계획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 경비실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계획은 향후 인허가 진행상황 및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 세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벽, 벽체(욕실벽, PD를 포함한 비내력골조벽, 조적벽, 경량벽체 등)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중에 경량벽체, 비내력골조벽 또는 조적벽으로 변경(설계변경 등의 포함)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석고보드 벽체의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 및 천장 내 배관통과부분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상부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비확장 옵션 선택에 따라 바닥 난방배관의 배열, 범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세대는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주방가구 수납 개선 및 사용성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걸레받이 사이즈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불박이장, 화장대 등 가구류의 내부 구성 및 사이즈는 상이할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악세서리 제공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의 타일 나누기는 이질구간에 의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음(박판타일의 경우 색상 및 문양이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및 바닥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 제공여부는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욕실 플라스틱 도어의 색상은 목재도어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고층부의 세대는 배관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일부층의 층고가 상향(천장고는 변경 없음)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가스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안목치수는 평면으로 산정되며,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는 치수산정에서 제외됨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구배,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바닥단차는 실내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사항으로 욕실화의 문 걸림 등과는 무관한 사항임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펜트하우스세대(101A형, 101B형), PIT 특화세대(89형, 109형, 121형)의 테라스 또는 선칸부분의 출입을 위한 발코니 출입턱은 현장 여건 및 하자 방지를 위하여 변경(외부 난간재로 및 높이, 내부 턱 높이, 창호 높이 및 형태 등)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 내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평면구조에 따라 일부 평형은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가 아님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타입 및 주방 외부창호의 사이즈에 따라 주방가구 구성, 형태는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우물천장은 조명 및 에어컨 실내기 설치로 일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천장고는 2층 이상 세대 2.4m, 1층 세대는 2.5m로 계획되어 있으며, 89형, 109형, 121형 세대의 경우 1층은 2.5m, 스튜디오층(지하 특화층) 은 2.3m로 계획되어 있음 (창호크기 및 설치위치는 기준층과 동일함) - 2020년 4월 사업승인도면상 1층 세대의 천장고가 2.4m로 표기되어 있으나, 2.5m로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임. • 1~3층은 법규상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성능이 없는 철제문(SD)이 설치될 수 있음. • 101A형 및 101B형 세대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임 (계약시 설계변경 동의서 작성) - 101A형 : 세대의 현관 워크인장 내부 레이아웃 및 문위치 이동, 드레스룸 레이아웃 변경, 침실1과 거실 및 침실2 간의 벽체두께 를 변경(면적 및 침실 등의 실제 사용공간 치수 변경없음) - 101B형 : 세대의 현관 워크인장 내부 레이아웃 및 문위치 이동, 드레스룸 레이아웃 변경 • PIT 특화세대(89,109,121형) 지하층에 별도 자동문이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사양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형 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다용도실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평형에 따라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에는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음.(커튼월록이 적용되는 동 및 구간에는 환기캡이 미설치되거나, 설치시 해당부위 커튼월록의 형태, 디자인,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발코니 바닥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재질, 형태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세탁실에는 환기시스템장비가 설치되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에어컨배관, 가스배관 및 계량기, 보일러 연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탁실, 발코니 등 천장이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경우 상부세대 바닥드레인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함) • 51형은 세대간 발코니벽체의 일부가 경량벽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 • 59A/B, 74A/B, 84A/B/C/D, 101A/B 형은 실외기 공간이 대피공간내에 구획되어 있으며(이하 실외기 겸용 대피공간) 실외기 그릴 상부로 창이 설치되어 있음 • 실외기 겸용 대피공간이 적용된 세대는 에어컨 실외기를 세대별 1대만 설치 가능함 (59A/B, 74A/B, 84A/B/C/D, 101A/B)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수 및 그릴 사이로 유입된 물이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발코니 상부로 욕실, 주방, 세대, 환기용 배관이(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창호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보일러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에는 벽체의 종류에 따라 두께가 상이하여 연속된 벽면에서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면을 맞추기 위해 벽체 두께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확장형 세대의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시 창호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세탁기/건조기 후면이나 측면에 위치할 경우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동해야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사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확장한 세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춥거나 결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 세탁기 및 배관등의 동결로 인한 파손이 우려되므로 입주시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유리 컬러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계단실 방화구획 조건 충족을 위해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창문형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망입유리 설치 창호는 개폐 불가)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어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소방 관계법령에 따라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 겸용 대피공간이 설치된 세대는 해당벽면의 창호중 하부 일부만 실외기용 그릴이며, 상부는 대피공간용 창호로 계획됨 (해당세대: 59A/B, 74A/B, 84A/B/C/D, 101A/B)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해당세대: 51A/B, 89, 109, 121)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침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내부유리사양 및 결로,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시 거실 및 안방 외창은 난간대가 없는 상·하 분할창으로 시공되며, 그 외 실외창은 난간대가 있는 일반 이중창으로 시공됨 · 발코니 확장 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발코니 차시)는 미제공되며, 일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입면이 다를 수 있음 ·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창호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음 · 창호 및 문 열림방향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시스템 에어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벽부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 됨 - 51, 59, 74, 84, 89, 101, 109, 121㎡ : 거실, 안방 (2개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기본제공 벽부형 냉매매립배관 및 전기전원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설치되며(무풍일반/무풍공기청정 중 택 1), 견본주택 설치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제어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

	<p>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디퓨저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세탁실,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가스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용 가스차단기 및 전기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실외기 검용 대피공간의 경우 바닥 배수구는 미적용됨)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위치,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렌지후드 덕트커버에 자동식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덕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에 설치되는 수전, 물비누통 및 배수구등의 위치는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10층 이하 세대에는 환강기가 설치될 수 있고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 또는 세탁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외기(유상)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배관 방식은 층하배관으로 적용됨(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 옵션이며, 설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될 수 있음 • 발코니,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 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실 루버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으로 인해 렌지후드의 위치가 변경 되어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및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렌지후드, 환기설비,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배기설비 등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청소 및 교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리 비용이 발생함 • 세대내 통합 분전반은 신발장 및 현관 워크인장에 설치 되며, 통합 분전반 위치에 따라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적용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 세대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세대 1~3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최상층 세대의 전기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됨. • 전기쿱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쿱탑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 • 일부 아파트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동 옥상(아파트)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며, 실시공 시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동마다 설치되는 용량 및 크기가 상이함) •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식탁등의 경우 인테리어 최적의 위치로 식탁을 배치하고 그 상부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 등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확장선택 시 84C,84D에 한하여 거실 보조등이 설치됨. •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란 IoT 홈패드, IoT 도어락을 통한 방문자 영상통화/ 비밀번호 제공, 출입이력 조회 기능 및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시스피커, App, 핫봇과 연계된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임) •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와 연동되는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상품 및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 구매 후 세대 내 무선인터넷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기간은 변경 또는 미 제공 될 수 있음 •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성능 개선 또는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형, 109형, 121형에 연결되는 선권의 바닥 및 101A, 101B 형의 발코니 외부 테라스 바닥은 별도의 마감미 없는 무근콘크리트 바닥으로 제공됨